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7월 12일, 정부 제출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 8.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4. 8. 28.) 상정, 축조심사,

의결(원안가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 9. 4.)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정부)

무역항의 수상구역 내에 있는 항구나 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등 신고기관에 의무적으로 출입항 신고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출입항 신고 대상 어선은 이 법에 따른 무역항 수상구역 등에서의 출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선영)

현행법은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에 출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과 해양사고구조에 사용되는 선박 등은 출입 신고에서 제외됨.

그런데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어선안전조업법」의 제정(2020.8.28. 시행)에 따라 ‘어선’의 출입항 신고는 해당 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무역항의 수상구역 내에 있는 항구나 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은 현재 「어선안전조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등 신고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고 있음.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출입신고 제외대상에 어선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내항어선이 무역항의 항·포구에 출입하는 경우 「선박입출항법」 제4조에 따른 관리청과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신고기관에 각각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 대상이 되는 어선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법 적용간의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또한, 실제적용에 있어서 현행법에 따른 무역항 출입신고를 하는 선박은 무역항의 항만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출입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동 항만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내항어선은 출입신고의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찬반토론 요지

없 음

6. 소위원회 심사내용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 조경태 위원)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 대상이 되는 어선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출입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법 적용간의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함.

7. 심사결과

원안의결

8. 부대의견

없음

9. 소수의견 요지

없음

10. 관련위원회 의견 요지

없음

11.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불입서류 】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 대상이 되는 어선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출입 신고)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이하 이 조에서 “선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선박은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출입 신고) ① -----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4.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 대상이 되는 어선
4.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